



노동이 우리에게 와서

불안정 노동 이야기



노동이 우리에게 와서

불안정 노동 이야기

책을 펴내며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한 지난해, 전국에서 가게를 두지 않고 장사하는 인터넷 거래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3% 상승하고 전통적 대면거래 기반 유통업은 파산과 폐점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가사노동자 등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며 어느 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생활에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기업에 속해 있는 전통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플랫폼 불안정 노동자가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노동복지 과제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노동현장에서 플랫폼 불안정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 담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찾게 된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작은 고민을 홀로 가뉘두지 마시고, 함께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11월.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임승운

첫번째 이야기

사연1	부당하게 잘린 필라테스 강사 최유연씨	08
사연2	퀵서비스 배송 기사 강배달씨와 대리운전 기사 이주행씨의 산업재해 이야기	12
사연3	퇴직금 못받은 방송국 미용 노동자 김화장씨	16
사연4	임금 떼이고 절도로 고발당한 편의점 알바 18살 완판씨	20
사연5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게 된 가사노동자 이청소씨	24
사연6	근로자 대우를 못 받는 프리랜서 IT노동자	28

두번째 이야기

	불안정노동 어떻게 해결할까요?	34
--	------------------	----

각종 심터 정보

	각종 심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연락처, 주소 수록	38
--	---------------------------------------	----



불안정 노동의 현장



첫 번째 ✕ 이야기



사연1 부당하게 잘린 필라테스 강사 최유연씨

사연2 퀵서비스 배송 기사 강배달씨와
대리운전 기사 이주행씨의 산업재해 이야기

사연3 퇴직금 못받은 방송국 미용 노동자 김화장씨

사연4 임금 떼이고 절도로 고발당한 편의점 알바 18살 완판씨

사연5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게 된 가사노동자 이청소씨

사연6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IT노동자



불안정 노동의 현장

불안정 노동은 다양합니다. 대체로 일자리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uncertainty), 소득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며(inadequacy), 노동조건이 매우 취약하고(vulnerability), 국가의 사회 보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는(instability) 일자리를 불안정 노동이라 부릅니다. 이런 객관적 기준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불안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일자리가 '불안정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임금노동자의 46% 정도가 불안정 노동자라고 보고, 누구는 경제활동인구의 62%에 이른다고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불안정 직종인 '플랫폼 노동자'는 최소 22만 명에서 최대 1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프리랜서도 4백만 명 정도로 추산할 뿐입니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정 노동자는 언제 일거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의 권리에서조차 배제되기 쉽습니다. 또 대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억울한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IT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은 실제 이야기를 몇 가지 골라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발견한다면 억울함을 극복할 가능성과 방법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이야기



해당사진은 연출된 이미지로, 본문의 사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연 1.



부당하게 잘린 필라테스 강사 최유연씨

필라테스 강사 최유연씨는 온라인 강사 소개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한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와 1년간 시간제 강사 계약을 맺고 센터 회원들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료들과 센터 대표의 경영방침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일이 대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센터 대표는 다른 동료 직원들 앞에서 유연씨만 콕 집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더구나 유연씨 대신 강사를 새로 뽑게 됐다면서, 그 비용을 유연씨 월급에서 떼겠다고 했습니다. 유연씨는 억울해서 고용노동부와 상담했지만, 자신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사 소개 플랫폼을 통해 대표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곳에서도 필라테스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연씨는 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조합 등 노동자 지원단체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상담과 각종 지원을 받으며 유연씨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기 전에 노동자지원센터나 노동조합 등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번째 이야기

유연씨의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동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연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빌미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대표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대표의 손해배상 요구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노동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가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임금을 공제하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유연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구제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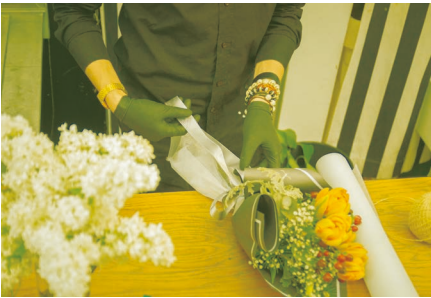
직업 소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이 점차 우리 주변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연씨 외에도 요가 강사, 꽃꽂이 강사, 학원 강사 등 강사 소개 플랫폼을 통해 구인과 구직이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서비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학원 강사처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이나 업무 내용 등이 정해지고, 학원의 작업 도구나 비품을 이용하며, 사업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서 일한 비중이 많으면 겸직이나 부업을 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노동자지원센터나 노동조합 등 노동자지원단체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과 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사진들은 연출된 이미지로, 본문의 사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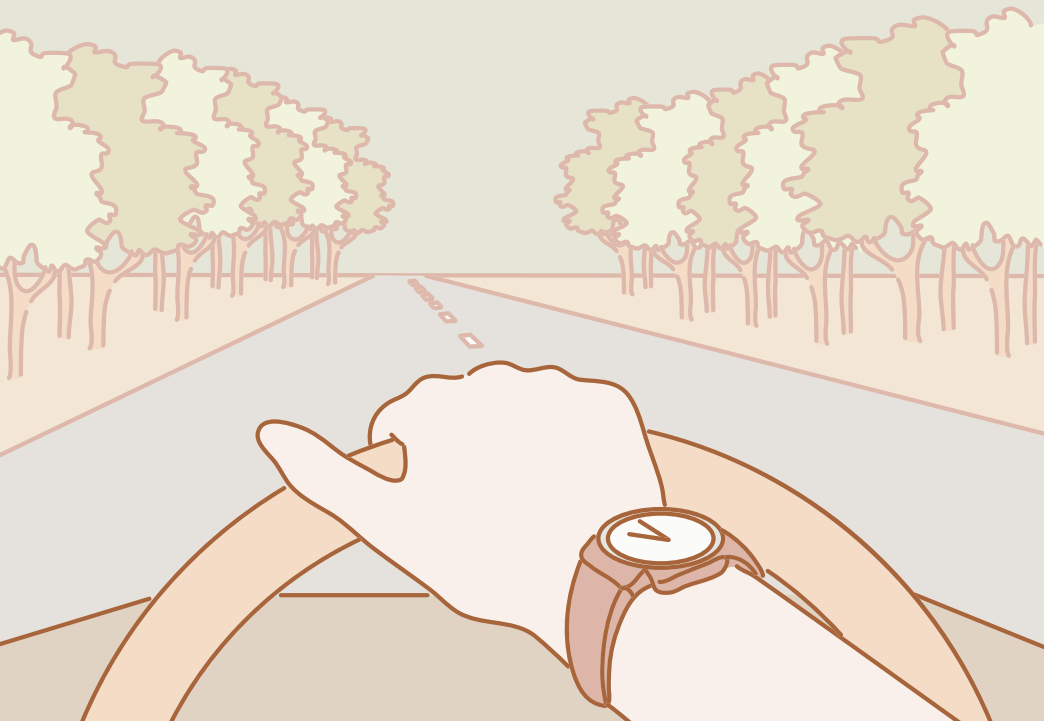


사연 2.

퀵서비스 배송 기사 강배달씨와 대리운전 기사 이주행씨의 산업재해 이야기

퀵서비스 배송 기사 강배달씨는 '신속 물류회사'에 등록된 배송기사입니다. 오전 7시부터 점심시간전까지 하루 5시간씩 주 6일을 일합니다. 그러나 신속물류에서 받는 임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오후에는 틈틈이 동네 음식점과 카페에서 배달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씨는 오전 배달 업무 중 빗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12주 이상 큰 부상을 당해 일도 못하고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신속물류'에서 일을 시작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고, 배달씨는 회사로부터 위로금 50만 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이주행씨는 휴대 단말기를 통해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리운전 콜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대리운전하고 귀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행씨는 콜업체에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콜업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배달씨와 이주행씨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동자 지원기관과 상담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배달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속물류회사’에서 월 12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월급도 130만 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근무한 기록들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 피보험자임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행씨는 안타깝게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리기사의 특성상 단말기를 통해 여러 회사의 콜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속성’이란 조건으로, 근로자가 문서상으로 소속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행씨는 치료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치료기간 동안 대리기사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산재보상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더 넓혀, 플랫폼노동 등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약 25억 원을 지원하여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달라이더, 배송기사,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못받은 방송국 미용 노동자 김화장씨

김화장씨는 유명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출연자의 메이크업을 담당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프로그램 연출자(PD)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내용과 업무장소에 관해서도 방송국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화장씨는 방송국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이 6개월마다 도급계약을 맺기로 하는 업무도급계약서를 김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도급계약은 근로계약과 다릅니다. 화장씨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방송 출연자의 메이크업을 완료해주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방송국과 대등한 사업자라면 화장씨는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써서 메이크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화장씨는 담당하는 방송프로그램 PD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이 없어 쉬는 날에는 방송국의 행사에 동원되어 다른 프로그램 출연자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방송 기간 중에는 심야에도 개표 방송이 이뤄지는 탓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던 화장씨가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방송국은 화장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은 자기들이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상 도급계약을 한 사업자라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송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PD가 사비로 화장씨를 채용한 것”이라며 “해당 PD와



첫번째 이야기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화장씨는 고용노동부에 방송국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화장씨가 방송국과 업무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화장씨는 방송국을 상대로 부당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작가나 아나운서, 촬영과 조명담당 보조 인력들 역시 화장씨와 같은 불안정 노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방송 작가는 아이템 기획부터 자료수집·원고 작성 등 업무를 맡습니다. 방송 업무 특성상 평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출근해 아이টে을 찾고 자료를 조사합니다. 대부분의 방송 작가 채용공고에는 근무 형태가 ‘상근’이라고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들 중에 프로듀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급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 등한 계약으로 인해서 방송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방송국 사이에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사진들은 연출된 이미지로, 본문의 사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 3월엔 MBC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던 아침뉴스의 방송 작가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방송국은 작가들이 프리랜서이고, 프리랜서 업무 위임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작가 2명은 방송국이 방송 아이템 선정과 원고 작성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업무장소와 출퇴근 시간 역시 방송국이 지휘 통제했기 때문에 대등한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들의 손을 들어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MBC 방송국이 계약직 아나운서를 해고하고 프리랜서라서 정당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나운서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어도 방송 출연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고, MBC 방송국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로 2년 넘게 일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판결을 보면 업무지시를 받고 전속되서 일을 했던 김화장씨는 방송국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로 봐야 합니다. 최근에 법원이나 제도가 변화하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방송작가나 아나운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김화정씨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적절한 지원입니다.



사연 4.



임금 떼이고 절도로 고발당한
편의점 알바 18살 완판씨

18살의 김완판씨는 구인·구직업을 통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어느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주와 최소 3개월을 의무적으로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3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지막 달의 임금은 의무재직기간을 지키기 못한 별로 포기하기로 정했습니다. 완판씨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점주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그만두겠다고 하자 점주는 근로계약의 3개월 의무재직기간을 들먹이며, 한 달 치 임금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완판씨는 편의점주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점주는 완판씨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훔쳤다고 완판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은 그냥 먹어도 좋다고 했던 점주가 완판씨에게 1개월 치 월급을 주기 싫어서 절도죄를 씌운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던 완판씨는 당황해서 결국 1개월분의 월급을 일부만 받는 것으로 하고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만약 완판씨가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면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완판씨가 점주와 체결한 3개월의 의무재직기간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1개월 분 월급을 포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을 안주려고 절도죄로 고발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큼니다.

완판씨처럼 우리 사회에서 15세에서 19세까지 중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3%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청소년의 경제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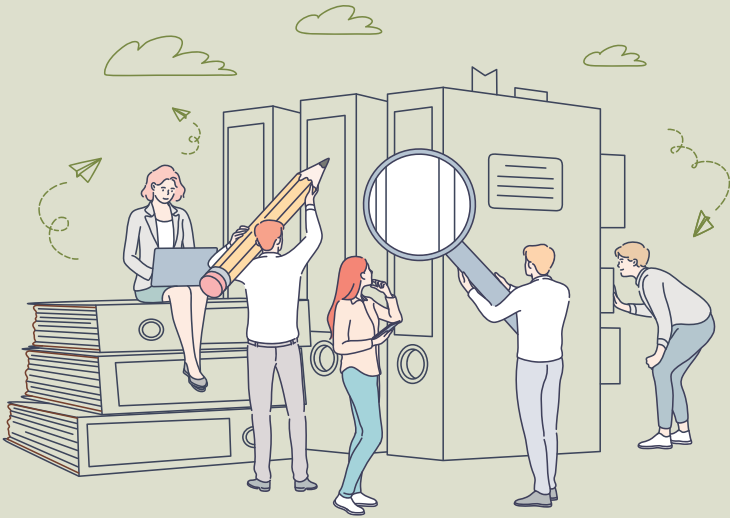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생 중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47.8%에 이르며 임금 체불도 15.1%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중 82%는 불리한 일을 겪어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훼손됐을 때 이를 지키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근면성실한 자세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사진들은 연출된 이미지로, 표본 조사의 시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 상담,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각 자치구의 노동센터가 청소년 노동교육을 진행합니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 및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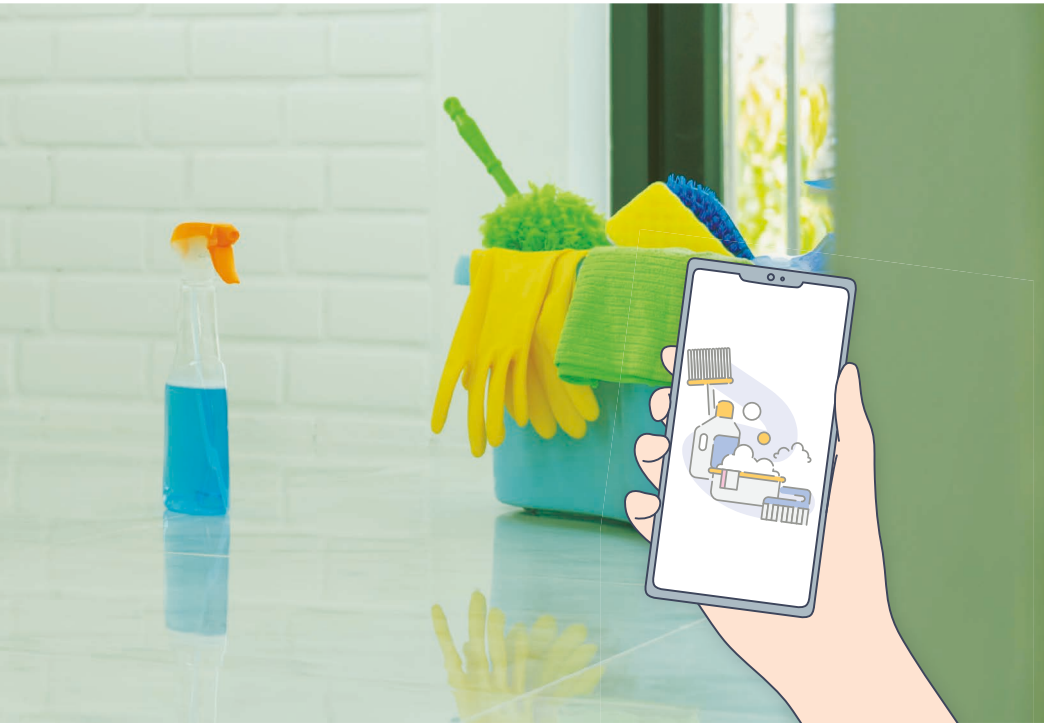
사연 5.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게 된 가사노동자 이청소씨



이청소씨는 하루에 두 가구 정도 방문하여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휴대전화 앱 형태의 가사도우미 소개 플랫폼에 접속해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청소씨가 이용하는 플랫폼은 가입자 수가 수백만에 달하는 유명 일자리 구직 앱부터 시작해 50~60대 여성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앱까지 다양합니다.

가사노동 소개 플랫폼의 이용자는 시간당 약 2만 원에서 2만3천 원 정도를 주고 이청소씨에게 집안 청소나 음식 만들기, 설거지, 아이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플랫폼이 이용요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청소씨에게 1만원 조금 넘는 돈을 줍니다.



청소씨는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독립된 특수고용노동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 내용도 모호합니다.

청소 외에 다른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요구한 이용자가 집에서 요양 중인 시아버지의 식사 마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평점이 좋지 않을 경우, 청소씨가 원하는 지역에서 일을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이야기

일을 하다가 다쳐도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산업 재해 보상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보험설계사나 방문 판매원 등 일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상을 하기도 하지만 가사노동자인 청소씨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난여름에 화장실을 청소하던 청소씨는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물리치료 비용도 컸지만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청소씨는 이용자가 치료비에 보태라고 준 10만 원을 제외하면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씨와 같은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이용자와 명확하게 보수와 업무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노동자 사이에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보수의 지급 방법과 시기,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해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5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가사노동자들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고, 사회보험료 지원 조항에 따라서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청소씨가 앞으로 인증받은 가사서비스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__시 __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급 : 있음 () / 없음 ()
 - 기타급여(세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원 / _____원
 - _____원 /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업주) 사업체명 : _____ (전화 : _____)
 주 소 : _____
 대표 자 : _____ (서명)
 소 : _____
 소 : _____ (서명)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우를 못 받는 프리랜서 IT노동자

프리랜서 IT 웹개발자인 강게임씨는 평소에 선망하던 게임개발업체의 오픈 개발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그 회사는 강게임씨에게 외주용역 계약을 해서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게임씨는 잠깐 고민했지만 “수습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게임씨 정규직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라는 업체 인사담당자 말을 믿고 프로젝트에 개발자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는 게임씨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 별다른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기간까지 게임씨가 담당하기로 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게임씨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적었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한다던 계약과 달리 실제 근로조건은 달랐습니다. 업체가 지정한 공유오피스로 출근하고, 개발의 진척 정도를 업체 관계자에게 보고 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공유오피스 근처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업체 관리자가 “너무 오랜 시간 사무실을 비웠다”고 게임씨에게 SNS 메시지로 문제를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수시로 계약 내용 외의 업무를 게임씨에게 처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지만 게임씨가 정규직에 대한 희망으로 계약 외적인 업무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자 업체는 신제품 게임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금 정산 같은 회계처리까지 게임씨에게 시켰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자신의 개발업무 외에 회계업무까지 하다 보니 하루 12시간 이상 밤잠도 설쳐 가며 일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게임씨는 5개월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한 달에 2일 정도만 쉴 수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프로젝트 완성일이 다가 오자 더욱 게임씨를 다그쳤습니다. 게임씨는 장시간 근로와 수개월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해 두통과 위염 등의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게임씨가 “부수 업무의 부담과 건강 상태로 인해 프로젝트 완성이 어렵다”고 얘기하자 업체는 그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공유오피스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게임씨는 배신감에 휩싸여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업체가 프로젝트 계약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상이지만 게임씨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임씨처럼 수많은 프리랜서 IT개발자들은 실질적으로 업체에 소속되어 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형식상 용역계약 혹은 도급계약자로 되어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IT 개발자와 단기간의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이후에 하는 걸 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희망 고문을 합니다. 단기간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인 프리랜서 IT 노동자가 계약 내용 외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T노동자들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편집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시간 대부분 개별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만나면 기업을 상대로 혼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증거를 취합해야 합니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조합, 노무사 등 노동자지원기구를 찾아서 상담하고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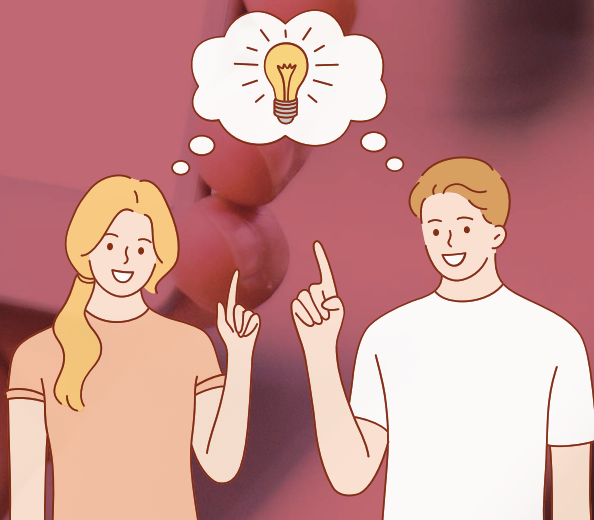


A blurred background image showing a group of people in a meeting or office setting. The imag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pink filter. The text is centered on the image.

불안정 노동,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번째 ✕
이야기



불안정 노동, 어떻게 해결할까요?



산업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더 많이,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소득이 줄자 이를 메우기 위해 '투잡'을 뛰는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대부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업체에 채용되기보다 배달 앱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일거리를 소개받아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플랫폼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불안정 노동은 줄어가는 소득을 일부 보전해 줄 수 있지만,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일과건강·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021년 4월 택배·배달·퀵서비스·가사서비스·대리운전 플랫폼에 종사하는 537명의 노동환경과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수료(단가) 인하 등으로 소득감소’가 가장 많았고, ‘인력 유입으로 경쟁 확대, 일감 감소’ ‘회사나 고객의 계약해지 압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62%의 응답자가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약국치료를 받았지만, 그중 89%는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 노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지만, 동시에 초단기 노동으로 인한 고용불안, 산재위험 노출 등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강화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 시장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대책은 불안정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불안정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사측이 모두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불안정 노동자는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멍니다. 그래서 불안정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단기계약에 방치된 불안정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6.8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대리기사들의 주요 휴게공간은 은행 인출기 부스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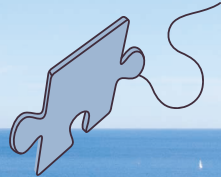
두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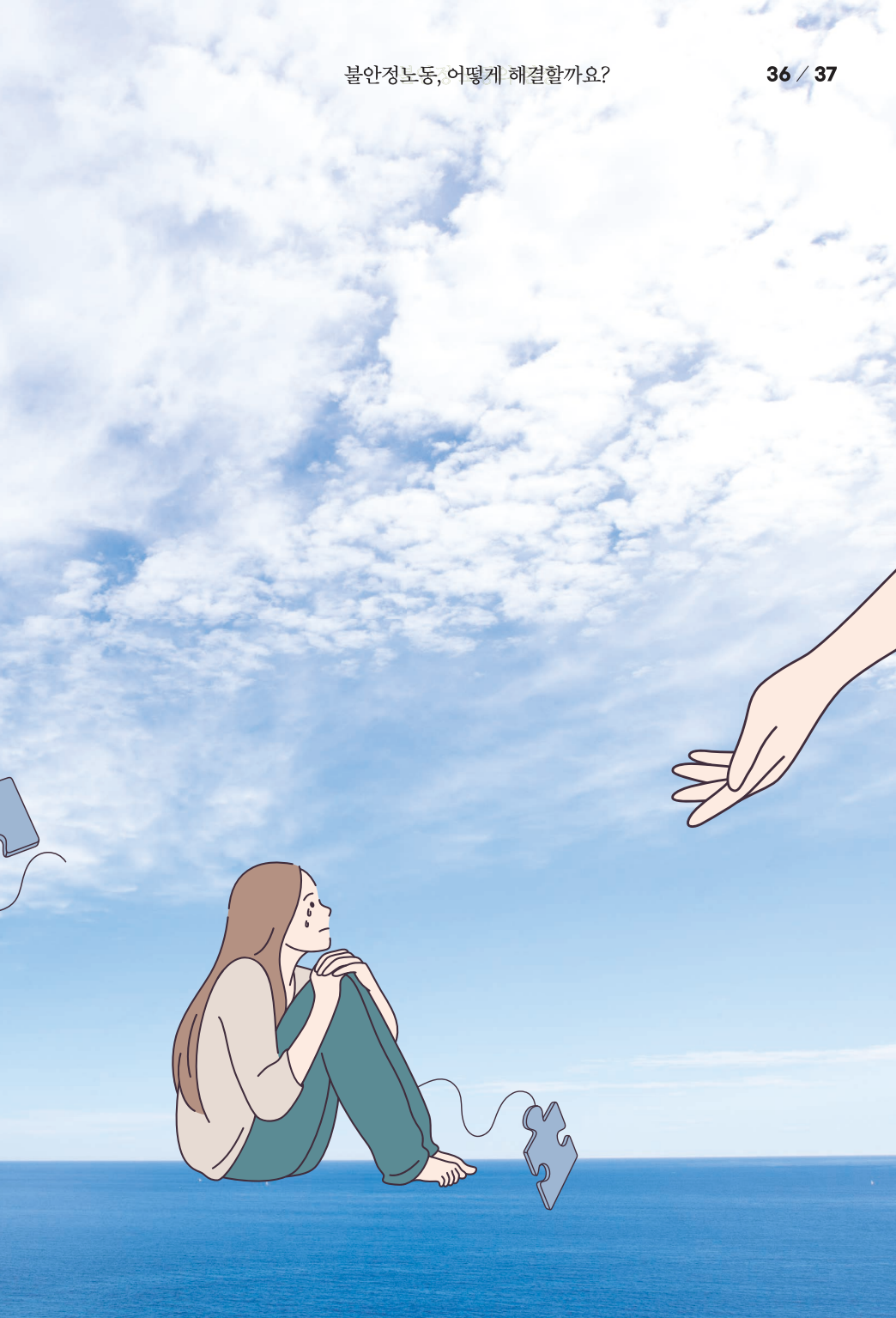
서울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요지에 플랫폼 이동노동자나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이런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어떨까요?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소한 지치고 힘들 때,
작은 비빌 언덕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연락처, 주소 수록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207 G밸리 페트라힐스 4층

대표번호 : 02-868-5255, 070-4128-4838(상담)

이메일 : seonamcenter@gmail.com

홈페이지 : seonamcenter.modoo.at



광역단위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소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번호 : 02-6925-4349, 02-376-0001(상담)

이메일 : labors@labors.or.kr

홈페이지 : www.labors.or.kr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9층 (안국역 5번 출구 앞)

대표번호 : 02-6929-2524, 02-722-2526(상담)

이메일 : seoul@emotion.or.kr

홈페이지 : www.emotion.or.kr

휴서울이동노동자 서초센터

주소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54, 4층

대표번호 : 070-5101-5431

휴서울이동노동자 북창센터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14길 38, 2층

대표번호 : 02-722-7214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센터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5, 3층

대표번호 : 070-7005-5595

휴서울서틀버스노동자센터

주소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0, 7층

대표번호 : 070-4267-6677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주소 :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37, 604호

대표번호 : 1833-8261

권역 단위 센터(시립)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대표번호 : 02-6959-5255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97, 4층 (가락시장역 4번 출구)

대표번호 : 02-408-5255

이메일 : dongnamc5255@naver.com

홈페이지 : dslc.modoo.at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대표번호 : 02-2217-5255

070-8693-1535(상담), 010-7922-2217(상담)



자치구 단위 센터(구립)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주소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 (천호역 3번 출구)

대표번호 : 02-3425-8700

02-3425-8715/8717(노무상담), 02-3425-8714/8716(심리상담)

02-3425-5834~5837(일자리상담), 02-488-7974(이동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gangdong.go.kr/nodong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강북구 상암로 64길 32-20 2층

대표번호 : 02-989-8580(노동상담), 02-989-8581(교육신청)

홈페이지 : www.gangbukhope.org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주소 : 서울 양천로 10길38 (신마곡벽산블루밍 메트로 오피스텔) 106동 2층

대표번호 : 02-2665-4038, 02-2665-4037(노동상담)

이메일 : gangseolc@gmail.com

홈페이지 : www.gangseolabor.org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주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3층

대표번호 : 02-886-7900

이메일 : galwc@gwanaklabor.kr

홈페이지 : gwanaklabor.kr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주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6, 209호(구의동, 웰츠타워)

대표번호 : 02-458-5055, 070-7730-5573(노동상담)

이메일 : gjworker79@hanmail.net

홈페이지 : www.gjworker.org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1차 213호

대표번호 : 02-852-7339, 02-852-7341(노동상담)

이메일 : gurond@hanmail.net

홈페이지 : www.laborguro.org

노원 노동복지센터

주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

대표번호 : 1661-9275

홈페이지 : nowonlwc.org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하부공간 4, 5, 6호

대표번호 : 02-3494-4400

이메일 : dobonglabor@dobonglabor.hanbiro.net

홈페이지 : dobonglabor.org

각종 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등의 정보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18, 마포창업복지관 305호

대표번호 : 02-306-2227, 02-306-2226(노동상담)

이메일 : mapolabor@gmail.com

홈페이지 : www.mapolabor.org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 331호

대표번호 : 02-395-0720, 02-395-0025(노동상담)

이메일 : sdmworker@sdmworker.org

홈페이지 : sdmworker.org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주소 : 서울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

대표번호 : 02-465-8573, 02-497-8573(노동상담)

이메일 : sdlabor1@gmail.com

홈페이지 : www.sdlabor.or.kr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주소 : 서울 성북구 화랑로 211,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206호

대표번호 : 02-909-3988

이메일 : eongbuklabor@naver.com

홈페이지 : www.sblabor.or.kr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81, 해누리타운 4층

대표번호 : 02-2645-0034, 02-2645-0858(노동상담)

이메일 : nbs2019@naver.com, www.facebook.com/yangcheonlabor

홈페이지 : www.yclabor.org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 3,4층
 대표번호 : 02-2633-7987, 02-2633-7989(노동상담)
 이메일 : ydpnodong@gmail.com
 홈페이지 : www.ydpnodong.org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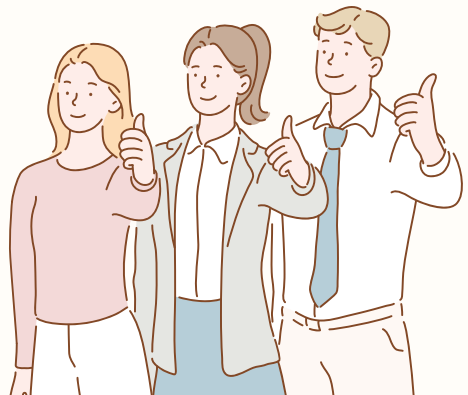
주소 :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45
 대표번호 : 02-6952-1872, 02-6952-1875(노동상담)
 이메일 : eplabors@naver.com
 홈페이지 : www.eplabor.org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39길 40, 1층(중구 구민회관)
 대표번호 : 02-2269-2220, 002-2269-9994(상담)
 이메일 : jglabor@jglabor.org
 홈페이지 : jglabor.org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대표번호 : 02-496-8476, 02-496-8477(상담전화)
 이메일 : jnlabor@jnlabor.org
 홈페이지 : www.jnlabor.org



각종 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등의 지도





노동이 우리에게 와서

불안정 노동 이야기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인 임승운(서남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만든이 문종인(서남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팀장)

손우정(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동철(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부장)

박주영(감수,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디자이너 아리에뜨 ariette.co.kr



노동이 우리에게 와서

불안정 노동 이야기